

판결요지서

제목 :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의 법률관계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나9003
원 고	안○○
피 고	1. 전○○ 2. 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조○○○ 주식회사 3. 남○○○ 주식회사
소(항소)제기일	2007. 12. 31.
판결선고일	2008. 5. 29.
쟁 점	1.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 그러한 장면 게재로 인하여 산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2. 피고 3이 피고 2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이후 피고 2가 위 사이트의 위 코너를 직접 관리, 운영한 경우, 피고 3의 관리, 운영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면, 위 코너에 이 사건 수중분만 장면을 직접 게재한 피고 2 이외에 피고 3도 산모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결과(주문)	<input type="checkbox"/> 원고 승소 <input type="checkbox"/> 원고 패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고 일부 승소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헌법 제10조 제1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 2항, 제44조의2 제1, 2항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A회사(이하 'A회사'이라 한다)의 프로그램 '○○○○' 제작팀은 2000. 11. 일산시 소재 ○○○ 산부인과)에 입원한 임산부였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의료진과 A회사 '○○○○' 제작팀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욕조에서 수중분만을 하는 장면(이하 '이 사건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였고, 원고와 그 남편의 얼굴을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화면 처리를 한 후 2000. 11.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장면을 방영하였다.

나. 피고 남○○○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이라 한다)는 유가 공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임신, 출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제작하기로 하고, 2002. 2. 주식회사 금○○○(이하 '금○○○'이라 한다), 엠○○○ 주식회사(이하 '엠○○○'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구축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엠○○○은 위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www.n○○○○.com)를 제작하였는바, 이 사건 사이트는 다수의 임신,

출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산 관련정보 중 '마○○○'라는 코너가 있었고, 여기에는 그네 분만, 라마즈 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라. 당시 엠○○○의 제작 담당 직원 이○○은 주식회사 마○○○(이하 '마○○○'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 전○○로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고 이 사건 사이트 내에서 마○○○를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을 할당해 주며 마○○○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재생시 '마○○○ 제공'이라는 타이틀이 표시되게 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마○○○' 코너에 게재하였고, 엠○○○은 2002. 7.경 피고 남○○○에 이 사건 사이트를 납품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엠○○○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5. 9.경 서울○○경찰서에 이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소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엠○○○과 피고 남○○○은 곧바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장면을 삭제하였다.

바. 한편, 원고나 A회사는 마○○○에게 이 사건 장면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

◎ 원고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 그러한 장면 게재로 인하여 산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피고 3이 피고 2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이후 피고 2가 위 사이트의 위 코너를 직접 관리, 운영한 경우, 피고 3의 관리, 운영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면, 위 코너에 이 사건 수중분만 장면을 직접 게재한 피고 2 이외에 피고 3도 산모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장면이 게시되어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는 하였지만, 을다 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장면은 약 50초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욕조에서 수중분만을 하는 장면이고 원고가 옷을 입고 있어 신체가 많이 노출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며, 원고의 얼굴 부분의 공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중분만 장면 자체는 이미 원고의 동의하에 A회사의 프로그램에 방송됨으로써 이미 대부분의 시청자가 시청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면이 일반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가 수중분만을 통해 무리 없이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를 종합하여 고찰할 때, 이 사건 장면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전○은 피촬영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엠○○○에게 이 사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공하였고, 엠○○○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촬영자인 원고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이 사건 장면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조○○, 남○○은 이 사건 장면의 사용에 관하여 A회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2007. 5.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회사가 이 사건 장면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장면의 사용에 관하여 A회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피고들과 A회사 사이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

일 뿐이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조○○○, 남○○○은, 이 사건 동영상으로 비록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영상이 담긴 이 사건 사이트 자체가 교육과 정보제공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이트가 공익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 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의 초상이 들어간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사이트 자체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3의 책임 검토

① 앞서 본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남○○○은 필요한 경우 금○○○과 엠○○○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엠○○○이 본 계약에 따라 용역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고, 엠○○○이 납품한 성과물과 개발 및 운영 관련 서류를 검수하여 가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피고 남○○○이 요구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본 계약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금○○○과 엠○○○은 이를 보완 후 재납품하여야 하는바, 피고 남○○○은 엠○○○의 이 사건 사이트 제작 과정에서 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제작계

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저작권 및 성과물의 소유권은 피고 남○○○에게 있고, 엠○○○은 피고 남○○○이 소유자 내지 권리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사이트가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정보 제공 등 공익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남○○○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트가 오로지 공익 목적만을 지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남○○○은 엠○○○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납품받아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통하여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 제고라는 이익을 누린 점, ④ 이 사건 사이트가 완성된 이후 계속하여 엠○○○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남○○○은 엠○○○의 이 사건 사이트 제작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고, 피고 남○○○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 장면이 문제된다는 통지를 받고 즉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장면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피고 남○○○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및 관리권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제작계약에는 엠○○○의 제작물로 인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엠○○○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나, 이는 피고 남○○○과 엠○○○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이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물로 인한 피고 남○○○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남○○○으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동영상 상이 게시된 상태를 허용하여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장면을 열람하도록 한 이상, 비록 이 사건 사이트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리를 엠○○○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면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데,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되어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남○○○은 이로 인한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엠○○○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조○○○ 및 피고 전○○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 남○○○의 책임은 이 사건 사이트 관리 및 운영의 주체로서 이 사건 장면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되어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이트의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남○○○과 사이트 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참조).

□ 판결의 의미

○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코너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산모의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그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장면 게재로 인하여 산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산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촬영자인 산모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이 사건 장면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용한 이상 산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사이트가 공익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 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산모의 초상이 들어간 이 사건 동영상은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 미리 산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산모에 대하여 단지 사이트 자체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피고 3이 피고 2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의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이후 피고 2가 위 사이트의 위 코너를 직접 관리, 운영한 경우, 피고 3이 피고 2의 이 사건 사이트 제작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제작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저작권 및 성과물의 소유권은 피고 3에게 있고, 이 사건 사이트가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정보 제공 등 공익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3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이트가 오로지 공익 목적만을 지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3은 엠○○○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납품받아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통하여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 제고라는 이익을 누린 점, 피고 남○○○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및 관리권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3로서는 비록 이 사건 사이트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 2가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면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되어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3과 사이트 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

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